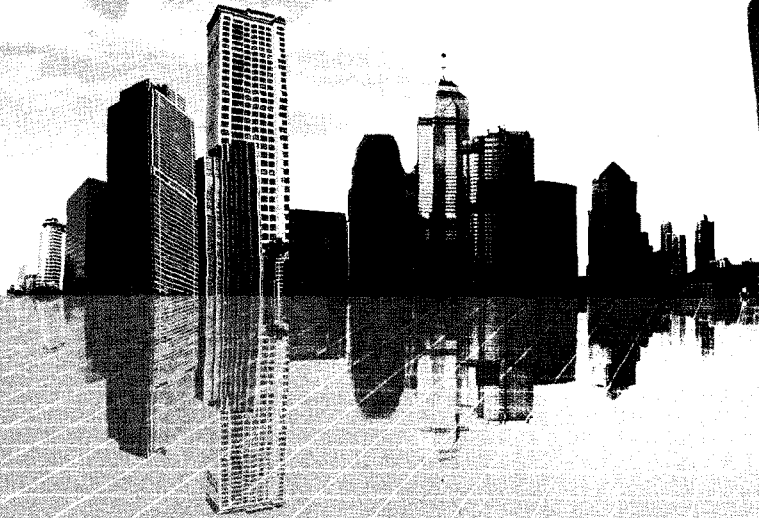


신문기사와 저작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신문기사를 허락 없이 발췌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가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사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무단으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물을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의 하나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일종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작자 개성 드러나는 경우 보호 받아

K신문사 편집국장인 A는 2002년 경 Y뉴스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K신문에 전제하였다.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A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가 Y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하여 K신문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정도를 넘어선 부분만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의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사는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위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시사보도를 판단할 때에는 작성자의 비판이나 예상 등이 표현되어 있

는지, 작성자의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했는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휘 등을 선택함으로써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났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 인정

한편 인터넷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P사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포털사이트나 기업체에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뉴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D사는 동의나 허락 없이 P사의 홈페이지에서 뉴스 기사를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P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사발령기사나 주식시세,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만 구성된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전달을 위한 보도기사라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 용어의 선택, 어투나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나 비판이 반영되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D사가 P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D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P사의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과,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 사전 저작자 허락이 가장 안전

신문기사 중 사실이나 논설, 칼럼, 만평과 같이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사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강하므로 당연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 대하여 논평이나 의견 등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한 기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지 아니면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받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기사인지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